#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99

발의연월일: 2024. 8. 6.

발 의 자:김성원·서일준·유용원

조경태 • 고동진 • 김태호

최수진 · 김선교 · 임이자

김소희 • 박충권 • 정희용

이종배 · 최은석 · 안철수

조승환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 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 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 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8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

제4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3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지 등) 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0의2. 제8호·제9호 또는 제10
	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
	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
	물을 이용하는 행위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생 략)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3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
	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u>③</u> 제1항 및 제2항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	
과・징수한다.	,